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8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백선희 · 김영환 · 차규근
손명수 · 정춘생 · 황명선
강경숙 · 이학영 · 이해민
이수진 · 신장식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로서 그 연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5조제1항 중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을 “제2항”으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을 각각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로 한다.

1. 기준연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8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군인연금법」 제7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의10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⑧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로,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로서 그 연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순직유족연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
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
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
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
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
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
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
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
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제2항-----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3. (생략)

⑥ (생략)

<신설>

-----.

1. 기준연금액

2.·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8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군인연금법」 제7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의10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⑧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지

<신설>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	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⑨ ----- ----- ----- -----. 1.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 2.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 ----- -----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	---

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
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
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
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
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
금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
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
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
-----제5조제4
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
-----「국민연금법」, 「국
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 ----- -----.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u>제5조 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u>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u>제5조 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u> ----- ----- ----- ----- ----- ----- -----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제4항부터 <u>제6항</u>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 ----- <u>제8항</u> ----- ----- -----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인정액과 <u>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u> 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	② ----- <u>제5조</u> ----- ----- -----

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④ 제2항-----

--.